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8 발의연월일: 2024. 6. 18.

발 의 자:김영호·김윤덕·최민희

송재봉 • 이기헌 • 박희승

문정복 · 김문수 · 김성환

한민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동 법률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 등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실효 성을 높이고, 언론의 자유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.

그런데, 언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오보나 허위보도가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하여 계속해서 확산, 복제 또는 재생산됨에 따라 언론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구제제도는 이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언론사 등이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규정하며,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・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 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 써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원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규정함(안 제15조제3항).
- 나.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에 관한 수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정정보 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함(안 제17조의2 제4항 신설).
- 다.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, 보도한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함(안 제17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3항 본문 중 "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·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,"를 "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"로 한다.

제1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에 관한 수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.

제3장제1절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7조의3(인터넷신문에 대한 특칙) ①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정보도 청구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 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보도한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.

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

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한다.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15조제3항(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 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
- 2.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 시를 하지 아니한 자
- 3.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
- 4.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 시를 하지 아니한 자
- 5.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.

- 제3조(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정보도 등의 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에 관한 수용을 통지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인터넷신문사업자의 정정보도청구등의 표시 의무에 관한 적용 례)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터넷신문사업 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5조(인터넷신문사업자의 정정보도 등의 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보도한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15조(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) | 제15조(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) |
| ① ~ ② (생 략) |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|
|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| ③ |
| 수용할 때에는 <u>지체 없이 피해</u> | <u>원 보도의 크</u> |
| 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 | <u>기 및 분량으로</u> |
| 의 내용・크기 등에 관하여 협 | |
| <u>의한 후,</u> 그 청구를 받은 날부 | |
| 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 | |
| 송하거나 게재(인터넷신문 및 | |
|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 | |
| 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 | |
| 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)하 | |
| 여야 한다. 다만, 신문 및 잡지 | |
|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 | |
| 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 | |
| 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 | |
| 를 게재하여야 한다. | |
| ④ ~ ⑧ (생 략) | ④ ~ ⑧ (현행과 같음) |
| 제17조의2(인터넷뉴스서비스에 | 제17조의2(인터넷뉴스서비스에 |
| 대한 특칙) ① ~ ③ (생 략) | 대한 특칙) ① ~ ③ (현행과 |
| |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|
| | 제3항에 따라 정정보도 · 반론 |

<신<u>설></u>

제34조(과태료) <신 설>

보도 또는 추후보도에 관한 수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정정보도 ·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.

- 제17조의3(인터넷신문에 대한 특 칙) ①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 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 지 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보도한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·반론보 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 단에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제34조(과대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15조제3항(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(생략)
- 2. 제15조제3항(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
- 3. 4. (생략)

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 니한 자

- 2.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 리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
- 3.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 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지 아 니한 자
- 4.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
- 5.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 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지 아 니한 자

<u>②</u> ------

1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3. • 4. (현행과 같음)

|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| ③ 제1항 및 제2항에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| |
|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 • | |
| 징수한다. | <u>.</u> |